

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7.30.		16		
2	2013.12.23.		17		
3	2017.11.2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

- 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52조에 의하여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 '교직원'이라 한다)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12.23>
- 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 (사무관장)**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업무관장부서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3.7.30.>
1. 전임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: 교무처 교무팀
 2. 일반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: 사무처 총무팀
- 제4조 (심의 위원회)**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정한 사무관장 부서에서 주관하여 심의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30.>
- 제5조 (자격)** 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본 대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13.12.23.>
-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항의 명예퇴직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6조 (근속년수의 계산)** 근속년수의 계산은 본 대학교에서 근속한 일부터 기준하여 명예 퇴직예정일까지로 한다.
- 제7조 (수당)**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<별표 1>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. 단,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7.30. 2013.12.23.>
- 제8조 (공지)** 제3조에서 정한 사무관장 부서장은 명예퇴직 허가 예정인원, 신청기간, 지급 방법, 지급일,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<개정 2013.7.30.>
- 제9조 (신청)** ①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직원은 제8조의 공지사항에 따라 소정의 명예퇴직 신청서 <별표 2>를 신청 기간 내에 사무관장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<개정 2013.7.30.>
- ② 전항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심사 및 결정)** ① 사무관장 부서장은 신청마감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3.7.30.>
1. 공상자 또는 질병중에 있는 자
 2. 본 대학교의 장기근속자
 3. 상위직에 있는 자
- ② 총장은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.
- 제11조 (결정통지)** 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부서장을

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제12조 (수당 지급시기)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 (수당의 수령권자)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, 부득이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『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』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(퇴직일 및 예우) ① 명예퇴직일은 매학기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필요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30.>

② 명예퇴직자의 퇴임식은 정년퇴임식과 같이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5월 26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13.12.23., 2017.11.2>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.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인 자	월기준액 × 70% × 정년잔여월수
2. 61개월 이상 120개월 이내인 자	(5년 이내 월기준액 × 70% × 60) + [(5년 초과 월기준액 × 35% × (정년잔여월수 - 60)]
3. 121개월 이상인 자	61개월 이상 120개월 이내인 자와 동일 (정년 잔여기간 120개월 초과분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)
<p>※ 월기준액</p> <p>1. 교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년 잔여기간 12 ~ 60개월 : 직위급의 90% - 정년 잔여기간 61 ~120개월 : 직위급의 80% <p>2. 직원(기능직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년 잔여기간 12 ~ 60개월 : 본봉 + 보직수당 + 상여금 500%/년 - 정년 잔여기간 61 ~120개월 : 본봉 + 보직수당 + 상여금 300%/년 <p>※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</p>	

